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주야간보호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 계약 대상
 - 나. 계약 기간
 -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2.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대상

- 1)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를 계약 대상으로 하며 이용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2)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보호자)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제공되는 비용 지원 없이 발생하는 일체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나.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이용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시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라.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 1) 급여이용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0~15%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10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용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3) 월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2024년 등급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원)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024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2024년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44,980
	장기요양 3등급	41,520
	장기요양 4등급	39,620
	장기요양 5등급	37,730
	인지지원등급	37,73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60,330
	장기요양 3등급	55,680
	장기요양 4등급	53,800
	장기요양 5등급	51,880
	인지지원등급	51,88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2등급	75,060
	장기요양 3등급	69,280
	장기요양 4등급	67,400
	장기요양 5등급	65,470
	인지지원등급	65,470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2등급	82,690
	장기요양 3등급	76,380
	장기요양 4등급	74,440
	장기요양 5등급	72,550
	인지지원등급	65,470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2등급	88,640
	장기요양 3등급	81,920
	장기요양 4등급	80,000
	장기요양 5등급	78,100
	인지지원등급	65,470

<비급여 항목 및 대상>

구분	금액	비고
식재료비(1식)	3,000원	(20일 기준) 3,000원×2식×20일=120,000원 1,000원×20일=20,000원
간식비(1일)	1,000원	

마.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 가) 이용자와의 급여제공 계약 내용 준수
- 나) 이용자의 신병 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할 의무
- 다)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 라) 급여제공 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 필요 시 예외)
- 마)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 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사)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나) 이용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라) 이용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나) 주야간보호 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 다) 이용자에게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 라)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센터에 즉시 통보
- 마) 이용자에게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 통보

바.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된 경우
- 다)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
- 라)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마)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 바) 이용자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돌봄이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